

제23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정책기획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 월 19 일

여 수 시 장 2023.9.19



여수시 조례 제1946호

붙임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946호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요현안 및 정책 등에 관하여” 를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로, “응하기” 를 “응하고 정책제안이나 시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한다” 를 “응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 · 집행 ·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장 · 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각 분야별 정책 및 현안과제 연구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책의 개발,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 를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촉

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전문인력의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여수시의회 의원 1명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별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는 신속한 정책 자문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시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중 “시(市)”를 “여수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장”을 “시장 또는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다

만,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간사)”를 “(간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사 1명”을 “간사 및 서기 각 1명”으로,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를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일”을 “5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원 및 여수시가 의뢰하여 정책 자문한 사람”으로, “수당과 교통비를”을 “참석수당, 여비, 자문수수료, 연구·조사 소요실비 등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등 지급기준(제11조 제2항 관련)

구 분	실적기준	지급기준액
자문수당	자문회의 참석 수당	2시간이내 10만원, 2시간초과시 5만원 추가
	정책연구 관련회의 참석수당	2시간이내 10만원, 2시간초과시 5만원 추가
	E-mail 서면자문	1회당 10만원(A4원고 10매이상)
자문수수료	위월	1회당 500,000원(A4원고 50매이상)
	외부자문	1회당 1,000,000원(A4원고 100매이상)
연구.조사 소요실비	정책연구 및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	
여비	외래자문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

※ 원고규격은 “여수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여수시의 <u>주요현안 및 정책 등에 관하여</u> 시장의 자문에 <u>응하기</u> 위하여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정책기획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u>응한다.</u></p> <p>1. 여수시(이하 “시(市)”이라 한다)의 종합발전계획 및 시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p> <p>2.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p> <p>3.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등</p> <p><신 설></p> <p>4. (생략)</p>	<p>제1조(목적) ----- ----- 주 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 응하고 정책제안이나 시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p> <p>제2조(기능) ----- ----- ----- 응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p> <p>1.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 · 집행 · 평가 등에 관한 사항</p> <p>2. 시정의 장 · 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p> <p>3. 각 분야별 정책 및 현안과제 연구에 관한 사항</p> <p>4. 새로운 정책의 개발, 행정기 선에 관한 사항</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신속한 정책자문 및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
-----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 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여수시의회 의원 1명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사회 · 경제 · 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이 된다.

1. 시(市)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별 전문가

다. 시정 주요현안에 관심이 많은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 ② (생략)

③ 시(市)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제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별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는 신속한 정책 자문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시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여수시 -----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등의 활동 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정책자문자료 등 안건을 미리 배부하고,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③ (생 략)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_____ 시
장 또는 위원장-----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한다. 다만,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
----- 간
사 및 서기 각 1명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
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② _____ 5일 _____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① -----
--- 위원 및 여수시가 의뢰하여
정책 자문한 사람 -----
----- 참석수당, 여비, 자문수

수료, 연구·조사 소요실비 등
을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
급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